#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66 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김종양・이종욱・조승환

허성무 · 서천호 · 최형두

강선영 · 김장겸 · 민병덕

고동진 · 이달희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·재정 운영이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 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- 나.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도 및 특례시와 협의를 거쳐 매년 시 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다.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며,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라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9조에 따른 사무특례 이외에 건축물의 허가,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,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업무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를 규정함(안 제10조).
- 마. 행정안전부장관에게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조직 및 정원, 교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례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바. 국가는 특례시에 이양 또는 위임되는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
##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 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특례시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 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.
  - 2. "도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서 특례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는 도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도의 책무) ① 국가는 특례시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·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 및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도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특례시의 책무)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, 도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
  - ② 특례시는 도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조직, 운영,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례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하여 도 및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 조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- 2. 행정 · 재정적 특례 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
- 3. 그 밖에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 및 특례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8조(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) ①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령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2.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
  - 3.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
  - 4. 제10조에 따른 특례시에 이양되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특례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  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위

- 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관계 도지사, 관계 특례시장으로 한다.
-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- 2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
- 3.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)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무특례)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- 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9조에 따른 특례시의 사무특례
- 2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. 이 경우 미리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3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0 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업무. 이 경우 특례시에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.
- 4.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, 제70조의2, 제73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,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·분석 및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업무
- 5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해제 업무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화단지육성시책 수립시 협의 및 특화단지육성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업무.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· 군기본계획 승인 업무. 이 경우 특례시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.
- 7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호에

따른 체납자(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청 업무

- 8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(저수지, 양수장, 배수장, 방조제 및 제방을 포함한다)의 등록 및 폐지 업무
- 9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업무
- 10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50조에 따른 물류인력의 양성 업무
- 11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· 변경 신고 처리 및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·폐쇄명령 업무
- 1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업무와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및 축소 업무. 이 경우 특례시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.
- 13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업무
- 1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에 관한 업무

- 15.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·고시,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허가·신고,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관리 및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업무
- 1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 입지수급계획 수립 업무
- 17.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21조 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 및 승인취소,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청문 등의 업무
- 18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·합병·상속 등의 신고,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사업자의 상호·명칭 등 변경 신고 및 폐업신고,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도·감독,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,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,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등록 등의 공고,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공사업 현황 등의보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
  - 19. 「주택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 및 「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건 설되는 임대주택 공급 또는 현금 납부 명령 업무
  - 20. 「주택법」 제72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

변경 승인 업무

- 21.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항 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획 수립 업무
- 2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·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와 허가·변경허가·변경신고수리 및 허가기간의 연장,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,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·변경허가·변경신고의 취소 및 영업 정지명령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,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,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폐기물 처리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·징수 업무
- 23. 그 외 다른 법률에서 특례시의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
- 제11조(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대한 특례)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특례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례시 조직 및 정원, 교육수요 등을 반영한 특례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립할 수있다.
- 제12조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) 국가는 특례시에 이양 또는 위임되는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

별법」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에서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특례시의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